─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 ─ 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 검 토 보 고 ─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 : 1999. 5. 29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6. 10

다. 의안번호 : 제 99-18 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○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(제2조)
 - 기준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규제의 신설 강화, 등록 공표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 -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위원회 구성(제3조)

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
-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도시환경과장, 건설과장
- 민간인 위원 :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
○ 회의(제5조)
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함

○ 간사 및 수당(제6조 및 제7조)
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됨
- 위원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
- 규제신고센터의 설치(제8조)
 -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

3. 검토의견

○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'93년 6월 22일 제정, 공포, 시행하여 왔으나,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,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,

○ 본 조례를 규제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참고사항

-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
 - 제43조(과태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<개정 90.1.13, 93.12.27, 95.12.29, 99.1.21>
 - 1. 제14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자명부의 비치·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
 - 3.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
 - 4. 제16조(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
 - 5. 제20조제1항(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관계공무 원의 출입·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제4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처분권자"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 <개정 95.12.29>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<개정 95.12.29>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체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<개정 95.12.29>.

○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

제28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 ① 시장·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처분권자"라 한다)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,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.
-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<전문개정 96.6.29>